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40

발의연월일: 2025. 4. 2.

발 의 자:허종식・유동수・박성준

김교흥 • 이훈기 • 이재관

김동아 · 이용우 · 이해식

노종면 • 박찬대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.

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 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 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.

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「의료법」 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

제10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"제4호까지"를 "제4호까지 및 제4호의2"로 한다.

4의2.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설립 및 관리·운영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) ①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항공사고 등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한다.

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개설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의료법」을 따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사업) ① 공사는 제1조의	제10조(사업) ①
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	
각 호의 사업을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의2. 인천국제공항 또는 그 주
	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항공사
	고 등 대응과 관련한 의료기
	관의 설립 및 관리·운영
5. 제1호부터 <u>제4호까지</u> 의 사업	5 <u>제4호까지 및 제4</u>
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	호의2
으로 정하는 사업	
	_
6. ~ 9. (생 략)	6. ~ 9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0조의2(의료기관 개설 등에
	관한 특례) ① 「의료법」 제3
	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
	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
	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의료
	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. 이 경
	우 의료기관의 종류는 「의료
	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
	따른 종합병원으로 한다.

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제 1항에 따른 종합병원의 개설ㆍ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의료 법」을 따른다.